

# 감정평가서

## APPRAISAL REPORT

의뢰인 : 인천지방법원 경매8계 사법보좌관 이 민 호  
건명 : 권 철 승 소유물건(2025타경510093)  
평가서번호 : JWB-250623-6001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담보감정평가 시 확인은  
행이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감정평가법인 정원**  
JungWon Appraisal & Consulting Co., Ltd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102, B동 303호  
(심곡동, 노트르담)

경인지사 : T) 032-715-5231 F) 0505-182-3199

E-mail : jungwon1@kapaland.co.kr

Home-page : www.appjw.co.kr



# (구분건물)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임의순

*임의순*



(주)감정평가법인정원 경인지사 지사장 임의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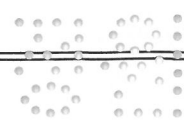
(서명또는인)



감정평가액	일억일천이백만원정 (₩112,000,000.-)					
의뢰인	인천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민호		감정평가 목적	법원경매		
제출처	인천지방법원 경매8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권철승 (2025타경510093)		감정평가 조건	-		
목록표시 근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타 참고사항	-		2025.07.03	2025.07.03	2025.07.04	
감 정 평 가 내 용	공부(公簿)(의뢰)		사 정		감 정 평 가 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구분건물	1개호	구분건물	1개호	-	112,000,000
		이	하	여	백	
합계					₩112,000,000	
심사 확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사자 : 감정평가사 김형선		<i>김형선</i>			

#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정평가액	비 고
					공 부	사 정		
1  가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12-12 대신주택	다세대주택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탁옥로73번길 50			1층	164.81			
				2층	164.81			
				3층	164.81			
				4층	164.81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12-12	대	제2종일반주거지역	423.4			
				(내) 철근콘크리트조 제4층 제402호	48.53	48.53	112,000,000	비준가액 (공용부분 포함)
				1 소유권 대지권	35.73	35.93		
					423.4 × ----- 421			
		합 계					토지·건물 토 지 : 89,600,000 건 물 : 22,400,000 ₩112,000,000.-	
			이 하		여 백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 I. 감정평가 목적

본 감정평가는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소재 “연희동행정복지센터” 남측 인근에 위치한 부동산(통칭 : 대신주택 제4층 제402호)에 대한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입니다.

## II.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 조건

### 1. 기준가치

본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 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 2. 감정평가조건

의뢰인이 제시한 별도의 감정평가조건은 없습니다.

### 3. 기 타

대상 물건의 위치는 집합건축물대장상 건축물 현황도면 등에 의하여 확인하였습니다.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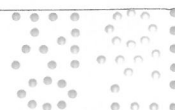
## III. 감정평가방법

본건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에 의거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 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또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2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로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상기의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건은 집합건물로서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이 일괄하여 거래되는 시장관행을 가지고 있어,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하여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 토지의 위치, 형상, 가로조건, 주위환경 등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을 비교하여 토지가액을 산정하고 건물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가액을 산정한 후 합산하는 원가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또한, 수익성 부동산의 시산가액 산정을 위해 대상 부동산으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기대순수익을 적정한 율로 환원 또는 할인하는 수익환원법으로 가치를 추정하는 수익방식 역시 본건 구분 건물의 특성상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여 타 방식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는 과정은 불필요합니다.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 IV.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본건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의거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자인 2025년 7월 3일을 기준시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V. 실지조사의 실시기간 및 내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른 실지조사 실시기간은 2025년 7월 3일이며, 실지조사 결과 공부상 내용과 대체로 부합합니다.

## VI. 그 밖의 사항

1. 본건은 현장조사시 폐문 및 이해관계인 등의 부재로 집합건축물대장상 건축물현황도, 외관 및 탐문조사 등을 기준으로 하였는바, 업무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본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분양 및 거래가 되므로 토지 건물의 구분평가가 곤란하나, 귀 요청(평가목적)에 따라 대상 부동산의 평가가격을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으로 배분하여 평가명세표에 기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 VII.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 1.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거래사례비교법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text{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 \text{사례가액} \times \text{사정보정} \times \text{시점수정} \times \text{지역요인} \times \text{개별요인}$$

### 2. 대상물건의 개요

소재지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12-12 (인천광역시 서구 탁옥로73번길 50)					
건물명 및 층·호	대신주택 제4층 제402호		규모	지상1~4층 (12세대)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라브지붕		용도지역 주용도	제2종일반주거지역 다세대주택		
일련번호 가	면적(㎡)			대지지분 (㎡)	용도	사용승인일
	전유	공용	합계			
	48.53	7.41	55.94	35.93	다세대 주택	1995.04.17.

\* 공용면적은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의 공용부분을 기준으로 합산하였음.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 3. 거래사례의 선정

### (1) 인근 유사 부동산의 거래사례

기 호	소재지	건물명	층/ 호수	전유 면적 (㎡)	대지 지분 (㎡)	거래시점	거래가액(원)
						사용승인일	전유면적당단가(원/㎡)
1	연희동 712-12	대신주택	2/ 201	48.53	35.93	2023-07-20	116,000,000
						1995-04-17	2,390,274
2	연희동 711-19	장원빌라 (가동)	2/ 202	52.02	30.87	2024-11-23	92,500,000
						1994-11-28	1,778,162
3	연희동 711-15	주연홈타운	2/ 203	48.81	28.62	2025-04-09	110,000,000
						2001-07-11	2,253,637

출처 :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정보체계(KAIS),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2) 비교사례의 선정

감정평가대상 물건과 동일건물내 소재하며, 층별, 위치별 효용도 등에서 유사하며 비교가능성이 높은 거래사례 '기호 1'을 비교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 4. 사정보정

사정보정이란 가액의 산정에 있어서 수집된 거래사례에 거래관계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는 상태의 가격수준으로 사례가액을 정상화하는 작업으로서, 상기 비교 거래사례의 경우 사정보정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1.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 5. 시점수정

### 1) 개요

대상물건은 구분건물로서, 한국부동산원이 조사·발표하는 전국 유형별 주택매매가격지수 중 대상물건과 물적 특성 및 지리적으로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대상물건 소재지역, 동일·유사유형 매매가격지수를 기준으로 시점수정치를 산정하였습니다.

### 2)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매매가격지수

인천광역시 연립 · 다세대	시점		적용지수	
			적용 월	지수
	기준시점	2025.07.03	2025 05월	99.8
	거래시점	2023.07.20	2023 06월	103.3

출처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통계정보시스템

### 3) 시점수정치 결정

#### ■ 거래사례 "1"

$$\frac{2025년\ 5월}{2023년\ 6월} = \frac{99.8}{103.3} \approx 0.96612$$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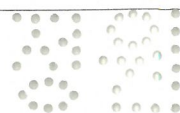
## 6. 가치형성요인 비교

-가치형성요인 비교표

조 건	항 목
단지 외부요인	대중교통의 편의성
	교육시설 등의 배치
	도심지 및 상업, 업무시설과의 접근성
	차량이용의 편의성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과의 배치
	자연환경(조망, 풍치, 경관 등) 등
단지 내부요인	시공업체의 브랜드
	단지내 총세대수 및 최고층수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
	단지내 면적구성(대형, 중형, 소형)
	단지내 통로구조(복도식/계단식) 등
개별적요인	층별 효용
	향별 효용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 별)
	내부 평면방식(베이)
	간선도로 및 철도 등에 의한 소음 등
기타 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가치형성요인 비교치

일련 번호	비교사례 1	단지외부 요인	단지내부 요인	개별적 요인	기타 요인	누계
가	대신주택 201호	1.00	1.00	1.00	1.00	1.000
	본건 및 거래사례는 동일건물내로서 단지외부요인 및 단지내부요인 동일하며, 개별적요인(층별 위치별 효용) 또한 대체로 유사하여, 전반적인 개별요인 대등시 됨.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 7. 산정단가 결정

일련 번호	거래사례단가 (원/㎡)		사정 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 요인비교	산정단가 (원/㎡)
가	거래사례 1	2,390,274	1.00	0.96612	1.000	2,309,292

## 8.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일련 번호	층/호	전유면적 (㎡)	산정단가 (원/㎡)	산출금액 (원)	시산가액 (원)
가	4/402	48.53	2,309,292	112,069,941	112,000,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 VIII. 참고가격 자료

### (1) 인근지역 유사 부동산의 가격 수준

인근지역내 유사 구분건물의 가격 수준은 면적별, 준공년도 및 층별, 위치별, 향별 효용, 조망권, 프라이버시, 개방감 등에 따라 전유면적당 약 @2,200,000원/㎡ ~ @2,500,000원/㎡ 내외 수준입니다.

### (2) 본건 감정평가선례

출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KAPA HUB 등

기 호	소재지	건물명	층/ 호수	전유 면적 (㎡)	감정 평가 목적	기준시점	감정평가액(원)
						사용승인일	전유면적당단가 (원/㎡)
가	연희동 712-12	대신주택	4/ 402	48.53	기타 담보	2021-12-08	121,000,000
						1995-04-17	2,493,303

### (3) 인근지역 감정평가선례

출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KAPA HUB 등

기 호	소재지	건물명	층/ 호수	전유 면적 (㎡)	감정 평가 목적	기준시점	감정평가액(원)
						사용승인일	전유면적당단가 (원/㎡)
A	연희동 712-2	대명그린빌	2/ 204	52.935	법원 경매	2025-03-17	157,000,000
						2012-08-17	2,965,902
B	연희동 712-3	삼진빌라 제A동	3/ 301	51.32	기타 담보	2022-12-12	142,000,000
						1994-07-18	2,766,952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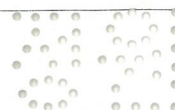
## IX. 감정평가액 결정의견

### (1) 감정평가액 결정에 관한 의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다른 감정평가방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상 부동산의 특성상 다른 감정평가방법의 적용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인근의 감정평가선례 및 유사 규모의 거래가격수준 등을 종합 참작할 때,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의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바, 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2) 감정평가액

일련 번호	층/호	전유면적 (㎡)	산정단가 (원/㎡)	산출금액 (원)	시산가액 (원)
가	4/402	48.53	2,309,292	112,069,941	112,000,000



#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소재 "연희동행정복지센터" 남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출입 및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아시아드경기장역(인천 지하철 2호선) 및 노선버스정류장이 위치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지붕 지상4층 건물 내 제4층 제402호로서,  
(사용승인일 : 1995.04.17.)  
외벽 : 콘크리트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벽지 및 타일마감 등  
창호 : 하이새시창호 마감 등임.

## (4) 이용상황

다세대주택 단위세대(방3, 거실겸주방, 욕실겸화장실, 발코니 등)로 이용중임.

※ 본건은 현장조사시 폐문 및 이해관계인 등의 부재로 집합건축물대장, 첨부도면, 현지 주민 탐문조사 등을 기준으로 하였는바, 업무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



##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5) 부대설비 내역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 개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는 것으로 탐문 조사됨.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황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에 준하는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 등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연희3지구), 도로(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 과밀억제권역임.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10) 기타 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본건의 임대관계 미상임.



#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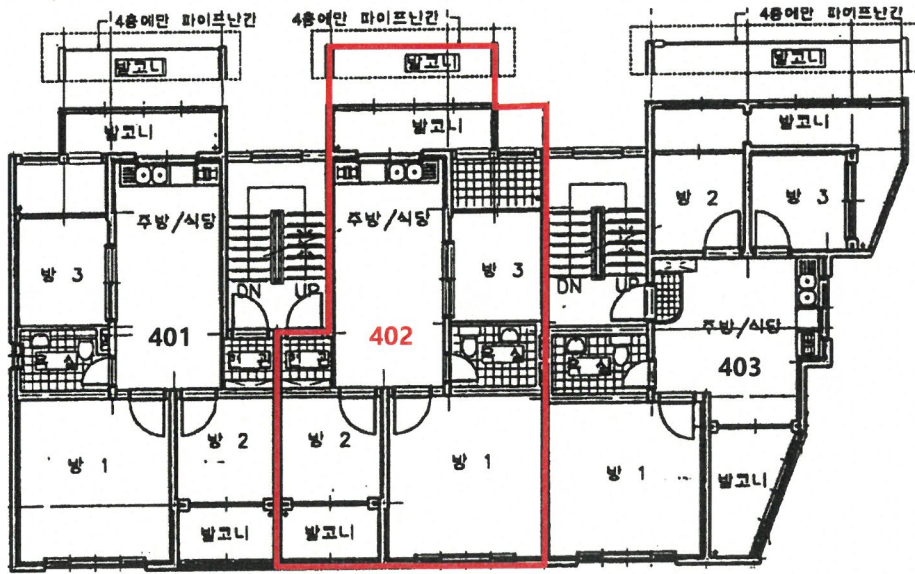
소재지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12-12



S = no scale

## 本件 대신빌라 제4층 제402호



# 사진용지



본건 전경



본건 전경



본건 현관

